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50-8471~4 / 전송 750-8477

문서번호 문재86700- 1159

시행일자 1993.11.24

(경유)(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부 시 장	전결	
문화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문화재과장		
기안	문화재 1계장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1. '93.11.10 개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별첨 고시(안)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목록 : 별첨

나.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함.

첨부 고시(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문화재관리국장

참조 유형문화재과장

제목 문화재 지정 통보

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첨 목록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목록 1부.

2. 해당도면 및 사진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 안)

수신 중랑구청장

참조 문화공보실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별첨 목록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동조례 제17조 ①항에 의거 귀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니,

2. 관계부서(시민봉사실, 세무1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토지관리과, 공원녹지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관계 공부 정리 및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목록 1부.
2.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별첨 목록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목록 1부. 끝.

문 화 재 과 장

수신처 세정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지도과, 도시개발과, 재개발과, 도로시설과, 공원과, 녹지과장

(제 5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게재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하였기 재산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게 통보하고자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2부. 끝.

문 화 재 과 장

(제 6 안)

수신 서울 용산구 효창동 3-4 한상국 귀하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기념물)지정 통보

1. 귀하께서 소유하신 별첨목록의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되어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통지하오니, 문화재 보존관리 관계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문화재지정 목록 1부.
2. 지적현황(문화재지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7 안)

수신 서울지방 경찰청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지정 통보

1.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별첨 목록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문화재지정 목록 1부.
2. 문화재지정 지적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고 시 (안)

고시일자	1993. 11. 30	제 743 호
결재권자	시장	부시장

서울특별시고시 제 [illegible] 호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3. 1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목록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지정물건	소재지	지번	관리단체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5호	아차산봉수대지	아차산봉수대지 (4060㎡)	중랑구		중랑구청
				- 묵동	산46-1 (2966㎡)	
				- 신내동	산139 (668㎡)	
				- 상봉동	산6 (274㎡)	
				- 중화동	산1 (152㎡)	

議　　決　　書

< 審議結果 >

1. 아차산 봉수대지 문화재 지정 심의

서울시 문화재(기념물)로 지정한다.

2. 정도 전비 건립 검토

유허비는 기설치된 돌석으로 대체하고, 동상건립은 불가하며
신도용 계시비는 돌석설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유관의 동상 및 비우각 건립 검토

건립불가

4. 한글 고비 우회 도로개설 변경안 검토

원안통과

5. 창의문 정비 시민 개방 (보고)

정비개방 매우 좋을 것임.

1193. 11. 10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제2분과)

심우준　문명대　홍윤식　임효재

이현희　이성무　허영환　이태진

최숙경　이준희

서울특별시기념물

제 15 호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

명 칭 : 아차산 봉수대지

수 량 : 4060 ㎡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1993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소유자	주소	소재지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한상국	용산구 효창동3-4	중랑구 묵동 산46-1 신내동 산139 상봉동 산 6 중화동 산 1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연월일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시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소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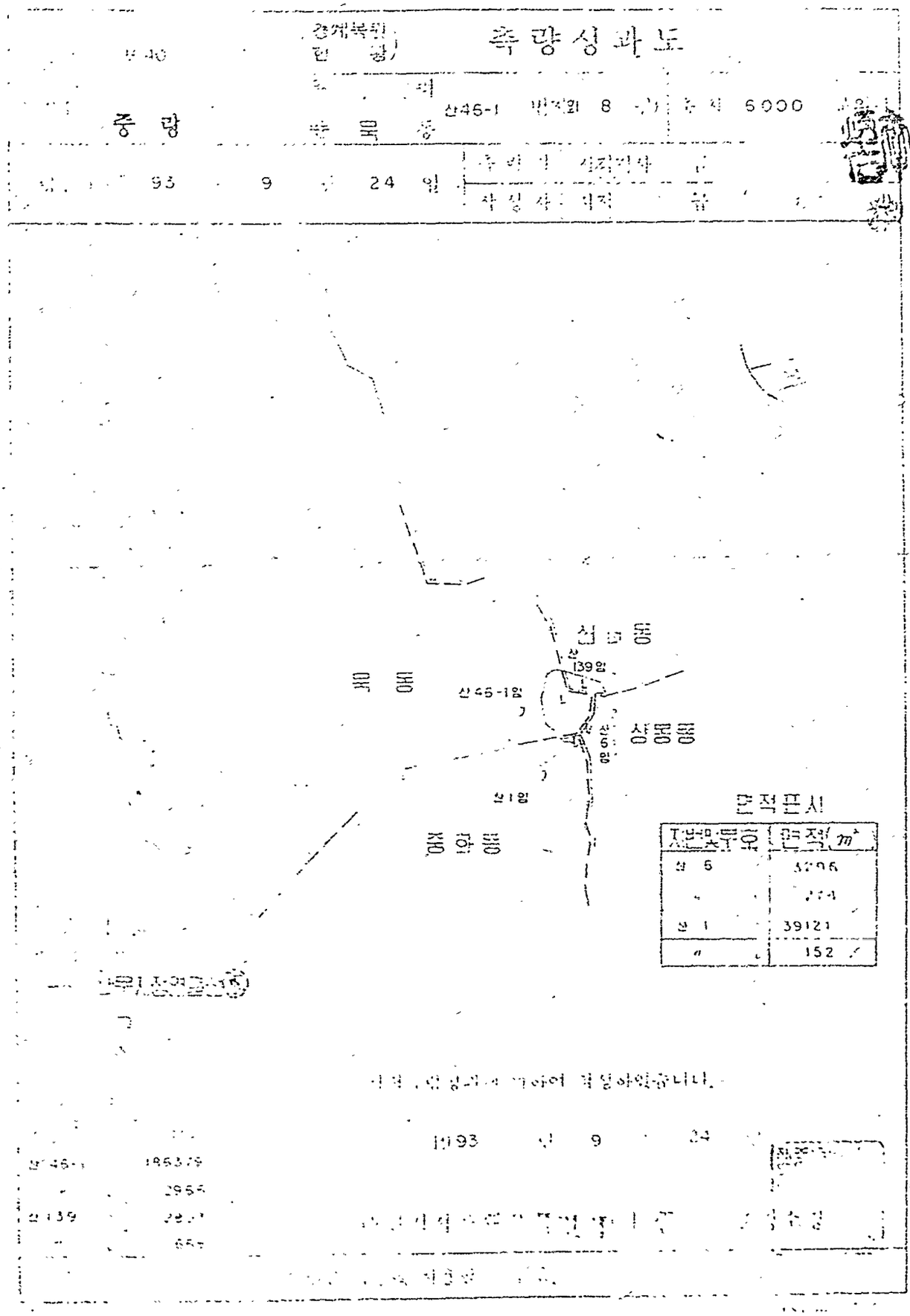
측량성과도
산46-1
면적표시
지번
면적 ㎡
39121
152